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51522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20762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515228 판결

전문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 보조참가인 회생채무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

변론 종결 2016. 9. 21.

판결 선고 2016. 10.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4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대구 수성구 B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C, D를 위탁자, 원고를 수탁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 주식회사 메이븐을 채무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7. 타임건설, 주식회사 메이븐과 사이에 주식회사 메이븐의 공사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타임건설은 2014. 6. 25.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맥이앤씨(이하 '한맥이앤씨'라 한다)에 공사대금 924,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라. 타임건설은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한맥이앤씨, 보증금액 244,444,440원, 보증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29.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한맥이앤씨에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9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바. 타임건설은 2015. 2. 24.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2015. 2.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3. 20.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을 받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타임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 12. 15. 타임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사. 한맥이앤씨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 원고는 한맥이앤씨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진행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73,362,000원 중 263,362,000원으로 합의하고, 2015. 5. 26. 1억 원, 같은 해 6. 19. 81,681,000원, 같은 해 10. 8. 81,681,000원을 변제하였다.

자. 한맥이앤씨는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9. 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타임건설의 당좌거래 중지로 한맥이앤씨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한맥이앤씨에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타임건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민법 제481조에 따라 한맥이앤씨의 권리인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263,362,000원 중 보증금액 244,444,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한맥이앤씨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한맥이앤씨로부터 위 보증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244,444,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한맥이앤씨로부터 양수한 보증금 채권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증약관 제1조는 "피고는 계약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타임건설은 당좌거래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보증계약의 약관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한맥이앤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맥이앤씨가 회생채권자로서 타임건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고 있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임건설이 2015. 2. 24.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한맥이앤씨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이행하고 2015. 3. 3.

타임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의 타절을 통보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타임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타임건설은 한맥이앤씨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타임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에 대하여 회생채권액 중 76%는 출자전환하고, 24%를 현금변제하되,

1차년도(2016년)부터 현금변제를 하기로 한 사실, 한맥이앤씨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현금변제 부분은 아직 그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출자전환 부분도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의 실제 가치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주식의 액면가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회생계획의 인가는 피고의 보증책임에 영향이 없다.

2) 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의 기성실적은 향후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데 타임건설이 허위의 기성실적증명서와 하도급대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6555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타임건설은 이 사건 보증계약 신청 당시 피고에게 '한맥이앤씨와 타임건설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의 기성실적과 관련하여 기성검사일 2014. 9. 30., 총 기성금액 429,000,000원, 현금 429,000,000원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의 기성실적증명서,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을 제출한 사실, 실제로는 2014. 9. 30.을 기준으로 한맥이앤씨의 기성실적은 위 429,000,000원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타임건설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한 것인지

살핀다. 피고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보증채권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받는 이유는 보증기간 이전에 이미 공사가 마쳐져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과 보증서 발급 후인 보증기간 내에 새롭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보증의 대상으로 하려는 목적인데, 타임건설이 한맥이앤씨의 기성금을 429,000,000원으로 부풀려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증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관하여 보증한도 내의 금액에 관한 보증책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기성금을 공제한 잔여 공사 부분이 여전히 피고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고 하수급인이 보증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공사의 대금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이상 기성실적에 관한 기재는 피고의 보증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설령 타임건설과 한맥이앤씨가 기성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증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증범위를 넘어서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타임건설과 한맥이앤씨 사이의 총 계약금액 924,000,000원 중 하도급기성금액 429,000,000원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금액 495,000,000원에 대하여 한맥이앤씨가 2014. 10. 1.부터 2015. 5. 31.까지 실제 시공한 금액 중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액 244,444,44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한맥이앤씨의 하도급기성금액이 429,00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상 피고가 하도급기성금액 42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맥이앤씨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공사한 공사대금 273,362,000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273,362,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44,444,44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보증약관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한맥이앤씨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한맥이앤씨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 244,444,440원 및 한맥이앤씨가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2015. 2. 27.부터 7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원고가 한맥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안은진

판사권은석